

翻訳役務の委託に関する基本契約書 번역 역무 위탁에 관한 기본 계약서

〇〇会社〇〇〇〇 (以下「甲」という) と、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以下「乙」という) とは、甲乙間の翻訳に関する役務の委託について、次のとおり契約 (以下「本契約」という) を締結する。

〇〇회사〇〇〇〇 (이하 '갑'이라 한다) 과 현해농재통상합자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과 을 간의 번역에 관한 역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第1条 (目的) 甲は乙に対し、翻訳に関する役務およびこれに付帯する役務 (以下「本件役務」という) を委託し、乙はこれを受託する。

제 1 조 (목적) 갑은 을에게 번역에 관한 역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역무 (이하 '본건 역무'라 한다) 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第2条 (委託役務) 本契約により甲が乙に委託する役務 (以下「本役務」という) 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翻訳 (ある言語を使用した文書等の媒体に固定された内容を、他の言語に変換した上で文書等の媒体に固定する行為を指す。ただし、他の言語に変換された後のレイアウト作業等を含まない。以下本契約において同じ) およびその編集に関する役務

(2) その他前号に付随する役務、または甲および乙が別途合意した役務

②甲は、乙に対し、本役務の遂行上、乙が必要とする資料・機器等 (以下、「資料」という) を提供する。

③乙は、甲と緊密に連絡をとり、本契約に定められた各条項を誠実に遵守し、善良なる管理者の注意をもって本役務を遂行する。

제 2 조 (위탁역무)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역무(이하 '본 역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번역(한 언어를 사용한 문서 등의 매체에 고정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변환한 후 다른 문서 등의 매체에 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다른 언어로 변환된 후의 레이아웃 작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음) 및 그 편집에 관한 역무.

(2) 기타 전 호에 부수되는 역무 또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역무

②갑은 을에게 본 역무의 수행하기 위해 을이 필요로 하는 자료·기기 등(이하 '자료'라 한다)을 제공한다.

③을은 갑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 역무를 수행한다.

第3条 (適用範圍) 本契約に定める事項は、本役務に関する甲乙間の個々の取引契約 (以下「個別契約」という) のすべてに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②前項にかかわらず、個別契約その他の甲乙間の合意により、本契約の一部の適用を排除しまたは本契約と異な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当該個別契約の定めまたは当該合意が優先して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제 3 조 (적용범위)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은, 본 역무에 관한 갑과 을 간의 개별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모두에 적용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계약과 다른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의 규정 또는 해당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第4条 (個別契約) 甲および乙は、本役務の遂行にあたり、翻訳料等の本役務の具体的内容等、翻訳役務の履行に必要な条件に関し、別途に個別契約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②個別契約は、発注年月日、本役務の具体的内容、役務委託料、本役務の実施場所、本役務の報告形式、本役務遂行に要する費用、支払方法、納入すべき期日、納入場所その他の受渡条件等必要な事項を明記した発注書、またはこれに代わる書面（電磁的記録を含む）が乙に到達し、乙がこれに承諾する旨の通知をした時に成立する。

③甲および乙の双方が合意した場合に限り、本契約「別紙仕様書」に記された事項に基づき役務を行う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제 4 조 (개별계약) 갑 및 을은 본 역무의 수행에 있어서 번역료 등 본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번역역무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②개별 계약은 발주일자, 본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 역무 위탁료, 본 역무의 실시 장소, 본 역무의 보고 형식, 본 역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불 방법, 납기일, 납입 장소 기타 인도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발주서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서면(전자적 기록 포함)이 을에게 도달하고 을이 이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한 때에 성립한다.

③갑 및 을의 모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의 '별지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역무를 수행할 수 있다.

第 5 条 (資料・機器等の取扱い) 乙は、甲から貸与された資料がある場合、本件役務以外の用途に使用してはならず、善良なる管理者の注意義務をもって使用・保管・管理するものとする。

②貸与された資料が不要となった場合、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または甲からの要請があった場合は、乙は貸与された資料をすみやかに甲に返却するものとする。

제 5 조 (자료 및 기기 등의 취급)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본 역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여받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대여를 받은 자료를 갑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第 6 条 (役務委託料および支払方法) 甲は乙に対し、個別契約に定める役務委託料および費用を、第 7 条第 1 項に定める本役務の終了または成果物の納入後に乙が発行する請求書受領後、成果物納入完了日（第 7 条に定める検収完了の日をいう。以下同じ）から 30 日以内に、乙が指定する銀行口座に振込送金（振込手数料は、甲の負担とする）して支払うものとする。なお、支払期限日が銀行休業日にあたる場合における支払日は前営業日とする。

②甲の責に帰すべき理由により、第 7 条の規定による委託金額の支払が遅れた場合には、乙は、未受領金額につき、遅延日数に応じ、年（365日とする）3%の割合を乗じた額の遅延利息の支払を甲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 6 조 (역무위탁료 및 지불방법) 갑은 을에게 개별계약에서 정한 역무위탁료 및 비용을,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한 본 역무의 종료, 또는 성과물 납품 후 을이 발행하는 청구서 수령 후, 성과물 납품 완료일(제 7 조에서 정한 검수 완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음)로부터 30 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송금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의 지급일은 전 영업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액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을은 미수령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연(365 일로 함) 당 3%의 비율을 곱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第7条 (成果物の納入) 乙は、別に定める期日までに、本役務を終了するか成果物を納入するものとし、甲は個別契約において定める期日までに検査を完了させ、その結果を乙に対して通知し、以後合格するまで乙による成果物の補修と甲による合理的な検査を行い、成果物の合格をもって検収完了とする。

②乙は、本役務が期間内に終了できず、または甲乙合意した期日に成果物を納入できない合理的なおそれがある場合、遅滞なくその理由および遅延日数を明示して甲に通知し、対応を協議するものとする。

③前項にかかわらず、遅延理由が甲の責に帰すべき事由による場合、前項に従い通知された遅延日数の期間につき個別契約に定める期間および納期は延長されるものとし、当該期間および納期の延長に伴う役務委託料の増額その他の個別契約に定める条件の変更について、甲乙別途協議の上合意する。

④本条第2項の定めにかかわらず、天災地変、戦争、暴動、内乱、疫病その他の不可抗力、法令の制定・改廃、公権力による命令・処分、争議行為、輸送機関または通信回線の事故等の不可抗力によって成果物を期日までに納入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乙は、甲に対して納入遅延の責を負わない。

제 7 조 (성과물 납품) 을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본 역무를 종료하거나 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며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고, 이후 합격할 때까지 을에 의한 성과물의 보수와 갑에 의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성과물의 합격으로 검수 완료로 한다.

②을은 본 역무이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하거나, 갑과 을이 합의한 기일에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할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지연일수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대응을 협의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전항에 따라 통지된 지연일수 기간에 대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간 및 납기는 연장되며, 해당 기간 및 납기 연장에 따른 역무 위탁료 증액 등 개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④본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전염병 기타 불가항력,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정의행위, 운송기관 또는 통신회선의 사고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성과물을 기일 내에 납품하기 어려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납품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8条 (契約不適合責任) 甲は、前条に基づき納入された成果物について、納入完了日後21日以内に、当該成果物がその種類または品質に関して本契約および個別契約で合意した内容に適合しないこと（以下「契約不適合」という）を発見し乙に通知した場合に限り、当該成果物を返品することができる。

②前項の場合において、乙は、乙の責任および費用負担においてその契約不適合を修正し、修正した成果物を速やかに甲に提供する義務を負うものとする。

③前項の定めにかかわらず、当該契約不適合が、甲が乙に提供した翻訳原文または資料等に起因するなど、乙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らない場合、乙は本条に基づく責任を負わない。

④本条第1項の契約不適合により甲が損害を被った場合において、乙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が認められるとき、乙は、甲が直接かつ現実に被った通常の損害を賠償するものとする。

⑤賠償額は、当該契約不適合が発見された成果物について個別契約に定める役務委託料の額を上限とし、その具体的な賠償金額は甲乙協議の上定める。

제 8 조 (계약 부적합 책임) 갑은 전조에 따라 납품된 성과물에 대하여, 납품 완료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해당 결과물이 그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음(이하 '계약 부적합'이라 한다) 을 발견하며 을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성과물을 반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을은 을의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그 계약 부적합을 수정하고, 수정된 결과물을 갑에게 신속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부적합이 갑이 을에게 제공한 번역 원문 또는 자료 등에 기인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을은 본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본 조 제 1 항의 계약 부적합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은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배상액은 해당 계약 부적합이 발견된 성과물에 대하여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탁료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배상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第 9 条 (再委託) 乙は、甲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諾を得た場合、本契約および個別契約で定める本役務の全部または一部を、外部の翻訳者または校正者等の第三者に再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제 9 조(재위탁)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을 얻은 경우,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본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번역가 또는 교정자 등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第 10 条 (通知義務) 甲または乙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事実が生じた場合には、速やかに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 第 16 条第①項~第④項の各号のいずれかに反するとき
- (2) 合併、会社分割、または本契約に関連する事業を譲渡したとき
- (3) 住所、代表者、商号その他本取引上の重要な変更が生じたとき

제 10 조(통지 의무)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 16 조 제①항~제④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되는 경우
- (2) 합병, 회사 분할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양도한 경우
- (3) 주소, 대표자, 상호, 기타 본 거래상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第 11 条 (秘密保持) 機密情報とは、有形無形を問わず、本契約に関連して当事者から他方当事者へ提供された技術上、営業上、人事上その他業務上の一切の知識および情報を意味する。

②当事者は、機密情報の取扱いに関する契約(以下、「秘密保持契約」という)を本契約とは別に締結することとする。機密情報の具体的範囲は、秘密保持契約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③本契約の締結以前に別に秘密保持契約が締結されている場合、当事者の合意により有効な秘密保持契約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제 11 조 (비밀유지) 기밀정보의 정의는 함은 유형, 무형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적, 영업적, 인사적, 기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의미한다.

②당사자는 본 계약과 별도로 기밀정보의 취급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기밀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효한 비밀유지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第 12 条 (個人情報) 「個人情報」とは、乙が本役務を遂行するために、甲が乙に預託した一切の情報のうち、個人の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または個人識別符号が含まれる情報、並びにこれに付随して取り扱われるその他の情報をいい、前条に定める機

密情報であるものに限らない。

②甲および乙は、本役務の遂行に際して、個人情報を取り扱う場合には、それぞれ、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ならびに本契約の各条項を遵守して、本役務の目的の範囲内で個人情報を取り扱うものとし、本役務の目的以外にこれを取り扱ってはならない。

제 12 조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의는, 을이 본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맡긴 모든 정보 중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정보, 및 이에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기타 정보를 말하며, 전조에서 정한 기밀정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②갑 및 을은 본 역무의 수행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본 계약 각 조항을 준수하여, 본 역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본 역무의 목적 이외에는 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第 13 条 (知的財産権・著作権) 本役務遂行の過程で生じた成果物に関する知的財産権および著作権は、契約に定める役務委託料の完済時に乙から甲へ移転する。

②乙は、甲および甲が指定する者に対し、成果物の著作権者人格権を行使しない。

③乙は、甲の書面による承諾を得るかもしくは別途、合意をしなければ、成果物の全部あるいは一部およびその複製物を保有し、利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とする。

제 13 조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탁료 완납 시 을이 갑에게 이전한다.

②을은 갑 및 갑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성과물에 대한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받거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복제물을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第 14 条 (契約内容の変更) 甲および乙は、本役務量の増減、経済情勢の変動等の諸事情により、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の内容の変更の必要性が生じた場合には、相手方に対し、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の内容の変更を求めることができ、この場合、甲および乙は、誠実に協議を行う。

제 14 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역무량의 증감, 경제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성실하게 협의한다.

第 15 条 (不可抗力) 天災地変、戦争、暴動、内乱、疫病その他の不可抗力、法令の制定・改廃、公権力による命令・処分、争議行為、輸送機関または通信回線の事故、その他甲または乙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事由による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の全部または一部の履行遅滞または履行不能については、各当事者は責任を負わない。この場合、甲および乙は、甲乙協議の上、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の全部または一部を解除または変更できる。ただし、金銭の支払債務は、不可抗力によっても免責されない。

②当事者は、不可抗力発生後に遅滞なくその状況を書面により本契約の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甲および乙は、通知後速やかに不可抗力発生の実事を確認し、その後の必要な措置について協議し定める。

③不可抗力が発生した場合でも、乙は合理的に実行可能なかぎり、本契約に定める義務の履行を続ける努力をするものとする。

④不可抗力により乙が履行期間に役務を完了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甲に対して遅滞なくその理由を明らかにした書面により履行期間の延長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ける延長日数は、甲お

よび乙協議して書面により定める。

⑤不可抗力に起因して、乙に追加的経費が発生した場合、乙の請求を甲が調査のうえ、甲が負担すべき額に対しては甲および乙が協議して書面により定める。

⑥第1項により、乙が不可抗力が発生したと確認した日を起点として、不可抗力により本役務が実施できない日が60日以上継続した場合、甲は、少なくとも30日前に書面により乙に予告通知のうえ、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⑦前項により解除がなされた場合には、第17条の規定を準用する。

제 15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전염병 기타 불가항력,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권력에 의한 명령·처분, 쟁의행위, 운송기관 또는 통신회선의 사고, 기타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연 또는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금전 지불 의무는 불가항력에 의해서도 면책되지 않는다.

②당사자는 불가항력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상황을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 및 을은 통지 후 즉시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하며,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 정한다.

③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을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을이 이행기간에 역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⑤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을에게 추가적 경비가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를 갑이 조사한 후 갑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을이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역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갑은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사전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전항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 16 条 (反社会的勢力の排除) 当事者は、相手方当事者に対し、次の各項の事項を確約する。

①自らが、暴力団、暴力団関係企業、総会屋もしくはこれらに準ずる者またはその構成員（以下、「反社会的勢力」という）ではないこと。

②自らの役員（取締役、業務執行社員、また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が反社会的勢力ではないこと。

③反社会的勢力に自らの名義を利用して、この契約を締結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

④本契約期間が終了するまでに、自らまたは第三者を利用して、本契約に関する次の行為をしないこと。

ア 相手方に対する脅迫的な言動または暴力を用いる行為

イ 偽計または威力を用いて相手方の業務を妨害するか、あるいは信用を毀損する行為

⑤当事者の一方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場合には、相手方は何らの催告なしに本契約を解除できる。

ア 本条①項または②項の確約に反する申告を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

イ 本条③項の確約に反して本契約を締結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

ウ 本条④項の確約に反した行為をした場合

⑥前項の規定により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解除された当事者が解除に伴い発生した損害について、その相手方に対し一切の請求を行わないこととする。

제 16 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확약한다.

- ① 자신이 조직 폭력단, 조직 폭력단 관련 기업, 총회꾼,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그 구성원(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 한다)이 아님을 확인한다.
- ② 자신의 임원(이사, 업무집행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이 반사회적 세력이 아닐 것.
- ③ 반사회적 세력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닐 것.
- ④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인 또는 제 3 자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 관한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가.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 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 ⑤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본조 ①항 또는 ②항의 확약에 반하는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나. 본조 ③항의 확약에 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다. 본조 ④항의 확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⑥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당사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第 17 条 (解除) 甲または乙は、相手方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したときには、何らの催告なしに本契約および個別契約の全部または一部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 (1)当事者が振り出した手形または小切手が不渡事故を起こしたとき。
 - (2)当事者に差押え、仮差押えまたは競売の申し立てがあったとき、もしくは租税滞納処分を受けたとき。
 - (3)当事者が破産、会社整理開始、会社更生手続開始または民事再生手続開始の申し立てがあったとき、もしくは清算に入ったとき。
 - (4)当事者の解散もしくは営業の全部または重要な一部を第三者に譲渡しようとしたとき。
 - (5)当事者が本契約に基づく事項を履行せず、相手方が相当の期間を定めて催告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なおその期間内に履行しないとき。
 - (6)相手方に対して背信行為があったとき。
 - (7)相手方に公序良俗に反する行為があり、他方当事者において取引の継続を不相当と認めたとき。
- ②甲または乙は、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場合には、期限の利益を喪失し、相手方に対して負担する一切の残債務を直ちに弁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③甲または乙は、第 1 項の定めにより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を解除したときは、これによって直接かつ現実に生じた通常の損害の賠償を相手方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④第 1 項により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甲は、納入前の成果物（作成途中のものを含む。以下本項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その完成度合に応じて、甲乙協議して算定した金額を乙に支払うものとし、乙は、当該金額の支払と同時に、当該成果物を甲に引き渡すものとする。

제 17 조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독촉 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당사자에게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거나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3) 당사자가 파산, 회사정리 개시, 회사회생 절차 개시 또는 민사재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 (4) 당사자가 해산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5)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상대방에게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 (7) 상대방에게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 상대방이 거래의 지속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갑 또는 을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잔여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③갑 또는 을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제 1 항에 따라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납품 전의 성과물(작성 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완성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의 지불과 동시에 해당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第 18 条 (損害賠償) 各当事者は、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に違反して相手方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おいて、自らの故意または重過失が認められるときは、直接かつ現実に生じた通常の損害を賠償する責を負う。
②本契約および個別契約に関して各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負う損害賠償の額は、個別契約に基づき甲が支払い乙が受領した役務委託料の額を上限とする。

제 18 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본 계약 및 개별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개별 계약에 따라 갑이 지급하고 을이 수령한 용역 위탁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第 19 条 (法令の遵守) 甲および乙は、本契約および個別契約の履行に際し、本役務に適用される一切の諸法令を遵守する。また、本契約は、日本法を唯一の準拠法として解釈される。

제 19 조 (법령 준수)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본 용역에 적용되는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또한, 본 계약은 일본법을 유일한 준거법으로 해석한다.

第 20 条 (有効期間) 本契約の有効期間は、契約締結日から1年間とする。ただし、有効期間満了日の3か月前までに甲乙いずれかの書面による解除の申出がない限り、本契約は、有効期間満了日の翌日からさらに1年間は同一の条件での効力を有するものとし、以後の更新も同様とする。

제 20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의 서면 해지 신청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 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후 갱신도 마찬가지로 한다.

第 21 条 (権利義務の譲渡等の禁止) 乙は甲の事前の書面による承諾がないかぎり、本契約の地位を第三者に継承させ、あるいは本契約から生じる権利義務の全部または一部を第三者に譲渡もしくは引受けさせまたは担保に供してはならない。

제 21 조 (권리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승계시키거나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인수

(농해농재통상 서식 3 호)

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第 22 条 (協議事項) 本契約に定めなき事項または解釈上疑義を生じた事項については、法令に従うほか、当事者が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をはかるものとする。

제 22 조 (협의사항)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는 이외로,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한다.

第 23 条 (訴訟管轄) 本契約または個別契約に関する一切の紛争に関し、協議により紛争が解決されない場合、本契約に関連する一切の訴訟管轄は、当事者中訴訟を提起した側の住所を管轄する裁判所とする。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관할은,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第 24 条 (存続) 本契約の期間満了、解除その他理由の如何を問わず、本契約が終了した場合においても、第 8 条 (契約不適合責任)、第 12 条 (個人情報)、第 13 条 (知的財産権・著作権)、第 15 条 (不可抗力)、第 16 条 (反社会的勢力の排除)、第 17 条 (解除) 第②項および第④項、第 18 条 (損害賠償)、第 21 条 (権利義務の譲渡等の禁止)、第 22 条 (準拠法)、第 23 条 (訴訟管轄) および本条の各規定は、なお有効に存続するものとする。

제 24 조 (존속) 본 계약의 기간 만료, 해지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 8 조 (계약불이행 책임), 제 12 조(개인정보), 제 13 조(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제 15 조(불가항력), 제 16 조(반사회적 세력 배제), 제 17 조(해지) 제②항 및 제④항, 제 18 조(손해배상), 제 21 조(권리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 22 조(준거법), 제 23 조(소송관할) 및 본 조의 각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以上、本役務委託契約締結の証として本書 2 通を作成し、甲乙記名捺印のうえ各 1 通を保管する。

이상과 같이 본 업무 위탁계약 체결의 증표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며,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契約締結日계약체결일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甲갑 : ○○회사 ○○○○
(○○会社○○○○)
○○도○○시○○로 XXX 번길 XX
(○○道○○市○○路 XXX 番ギル XX)

代表대표 ○○○ (인 또는 서명)

乙을 : 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福岡県福津市中央 5 丁目 6 - 3 0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중앙 5 가 6 번 30 호)
이시자카 아키라 (인 또는 서명)
代表 石坂 晃 (印または署名)

別紙仕様書 (翻訳役務の委託に関する基本契約書 第4条関連)
별지 사양서 (번역 역무 위탁에 관한 기본 계약서 제 4 조 관련)

1 発注日 : ①本契約締結日、②原文(+資料)受領日中遅い方を発注日 (20XX 年 XX 月 XX 日) とします
발주일 : ①본계약 체결일, ②원문(+자료)수령일 중 늦는 쪽을 발주일(20XX 년 XX 월 XX 일)로 합니다.

2 原文の受領に関して (以下、チェック☑を付けた事項と記入事項_____が具体的内容に該当します)
원문 수령에 관하여 (이하 체크☑를 부여한 사항과 기입 사항_____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당합니다)
(1) 原文受領の有無 원문 수령 여부
☐受領済수령 완료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未受領미수령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예정)
(2) 原文を受領した媒体 원문을 수령한 매체
☐紙文書종이、☐電子文書전자문서 (☐DOCX、☐TXT、☐XLSX、☐PDF、☐PPTX、☐その他기타_____)
(3) 原文字数 원문 자수
☐コンピュータ計測 컴퓨터 계측、☐紙文書での推定 종이 문서에서의 추정) : X, XXX 字자

3 本役務の具体的内容 본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
A. 言語 언어 : ☐韓国語한국어→日本語일본어 ☐日本語일본어→韓国語한국어
B. 原文の種類 원문 종류
☐一般翻訳 일반 번역 : マニュアル메뉴얼・取扱説明書사용설명서、仕様書사양서、各種業務文書
각종 업무 문서 (報告書보고서、プレゼン等 프레젠테이션 등)、新聞記事等 신문 기사 등
☐特殊翻訳 특수 번역 : 法規법령、契約書계약서、論文논문、特許특허・知的財産지적재산관련 等等
C. その他付加 서비스 기타 부수적 서비스
☐なし없음
☐あり있음 (☐レイアウト편집레이아웃 편집、☐朝鮮語조선어→日本語일본어、☐手書き等 수서 등)

4 翻訳役務委託料 번역역무 위탁 요금(세 포함)
아가. 基本字数 기본 자수 (1000 字以内자 이내) : A. × B. × C. = X, XXX 円엔
이나. 基本字数超過 기본 자수 초과 요금 : A. × B. × C. × (字数자수 - 1000) = XX, XXX 円엔
우다. 아および의 합계액가. 및 나. 의 합계액 : XX, XXX 円엔

5 本役務の実施場所 본 역무 실시 장소 ☐弊社당사、☐その他기타 (☐お客様のご住所고객님 주소、
☐お客様指定場所고객님이 지정하신 장소_____)

6 本役務の中間報告 본 역무 중간 보고 ☐不要불요、☐必要필요(頻度빈도____日間隔일 간격)
報告方法 보고 방식 (☐メール메일、☐電話전화、☐その他기타_____)

7 本役務の遂行に要する実費 본 역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용
☐なし없음、☐あり있음 (☐原文受領실비용 원문 수령 실비용、☐資料代자료비、☐交通費교통비、
☐宿泊料숙박비、☐納品関係실비용납품 관련 실비용) : 計총계 XX, XXX 円엔
※翻訳役務委託料とは別にご請求させていただきます 번역역무 위탁 요금과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8 その他ご要望事項 기타 고객님의 원하시는 사항
(1) 用語集・固有名詞リスト・参考資料の有無 용어집·고유 명사 리스트·참고 자료 여부
☐なし없음、☐あり있음 (☐お客様準備고객님 준비、☐弊社準備당사 준비)
(2) 文字数制限 번역 후 자수 제한
☐なし없음、☐あり있음 (翻訳文ベースで번역문 기준으로_____字以内자 이내)
(3) 表現のご要望 원하신 번역 표현 : ☐なし없음、☐あり있음 (_____)

※訳文の想定読者、待遇法を具体的に記入下さい 번역문 상정 독자, 대우법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3) 特急作業의 必要性특급 작업 필요성 여부 : ☐なし없음、☐あり있음
※平常料金の 30~50%割増になります 통상 요금보다 30~50% 할증이 됩니다 (번역 난이도 등 고려)

9 支払方法지불 방법

弊社指定口座振込당사 지정 계좌 입금 (手数料お客様負担송금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하십시오)、
 現金手渡현금 수교、 その他기타 (_____)

10 納入すべき期日납품해야 할 기일 発注日から발주일부터 XX 日後일후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納入すべき期日とはお客様の検査および弊社の修正が完了した状態であることを示します
납품해야 할 기일은 고객님의 검사 및 당사의 수정이 완료한 상태인 것을 기리킵니다

11 納入方式その他の受渡条件납품 방식 및 기타 인도 조건

(1) 納入方法납품 방식

メール添付이메일 첨부 (パスワード비밀번호 부여)、 CD-R 郵送우송、 その他기타 (_____)

(2) 納入形式납품 형식 : (Word、 text、 Excel、 PDF、 PowerPoint、 その他기타_____)

(3) 納品形態납품 형태

基本料金기본 요금 (以下の4種から一つお選びください이래 4 종류부터 하나만을 선택하십시오)

(手書き타자기 Word 또는 text 파일 형식으로 특별한 서식 등을 설정하지 않고 입력하는 방식

上書き翻譯덮어쓰기 번역 <기존의 원문 데이터를 새로운 번역문 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식>、

ナンバリング넘버링 <원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번역문을 번호 단위로 열거하는 방식>、

対訳表대역표 <고객님이 표로 만드신 원문 파일의 옆에 번역문을 더하는 방식>)

レイアウト편집料金레이아웃 편집 요금

(Word 編集편집、 Excel 編集편집、 PowerPoint 編集편집、 その他기타_____)

※この契約書書式は、契約や納品に対する大まかなイメージをお客様に把握していただくことを目的として PDF形式で提供しているものです。実際の契約に際しては、お問い合わせ後にワード形式の基本契約書書式を別途お送りします。ワード形式の書式にお客様がお望みの事項をお書きになれる範囲でご記入頂き、弊社にご返送ください。

* 본 계약서 양식은 고객님의 계약 및 납품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PDF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 시에는 문의 후 WORD 형식 계약 서식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WORD 형식 서식에 고객님의 원하시는 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당사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